

붙임
근로장학생 기관 사전선정기준

(단위: 점)

구분	평가항목	가중치 (A)	평가항목별 구성사유 및 점수산정 방법
안정적 학업 여건조성(50)	소득분위	50%	◦ 저소득층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 - 신청학생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 -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점수를 높게 산정
취업역량 제고(30)	근로경험	20%	◦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통한 직업체험 기회 확대로 장학생의 취업역량 제고 - 신청학생의 '16학년도 2학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 - 근로시간이 적을수록 점수를 높게 산정
	전공일치	10%	◦ 근로장학기관 현장업무와의 전공연계 강화로 장학생의 취업역량 제고 - 신청학생의 전공분류와 근로장학기관의 직무내용 일치여부 확인 - 일치하면 점수를 높게 산정
소계		80%	
기타사항 (20)	성적	15%	◦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의 학업성취도 반영 - 신청학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 - 성적이 높을수록 점수를 높게 산정
	학년일치*	5%	◦ 근로장학기관 현장의 수요반영으로 장학생의 취업역량 제고 도모 - 신청학생의 학년과 근로장학기관이 신청한 학년 일치여부 확인 - 일치하면 점수를 높게 산정
소계		20%	
합계		100%	

* 근로장학기관이 수요신청 시 '선호학년' 정보를 '상관없음'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기관을 희망한 학생들에게는 동 항목에 대해 0점 부여 (동 기관배정 기준은 동일 희망근로기관을 신청한 학생들에 대한 상대평가로 모든 학생들에게 0점 부여 시 최종 결과에 영향 없음)

※ 근로장학생 기관 사전선정 기준은 대학의 최종 학생선발 및 기관선발을 위한 참고자료이며, 최종 선발은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결정. 끝.